이용 안내서

천사의집 주간보호센터

○ 인사말

“천사의집을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천사의집 주간보호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생활가정에서는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천사의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 천사의집 주간보호센터 소개

기관명	천사의집 주간보호센터	설치일자	2018년 12월 21일
급여종류	재가(주간보호센터)	입소정원	9명
대표자	안수진	협력의료	인천 백병원
이메일	suougin@naver.com	전화번호	032-467-9902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47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2,900 원 (1식)	
	간식비	500 원 (2회)	
시설규모	대지면적: 281.5㎡ 건물면적: 1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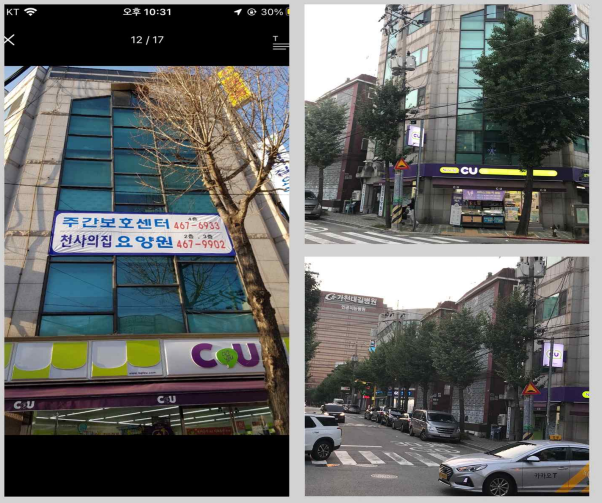

우수사례	o 2018년 12월21일자로 천사의집 재가주간보호센터로 설립하여 어르신의 인지능력제고와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노인 인권 존엄성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단 한건의 낙상사고 및 노인 학대사례가 없었고 o 평소 보호자와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어르신과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간의 상실감을 해소해 드림으로써 천사의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노인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음

구분	침실	사무	요양보호사	의료간호	프로그램	식당/조리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
시설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주간보호센터 입소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주간보호센터 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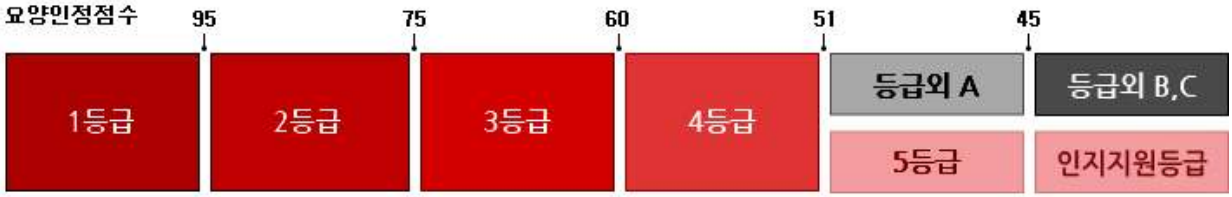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① 수급자와 계약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됩니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습니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합니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합니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합니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합니다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해드립니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해드립니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합니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급여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1. 세면도움	1) 세면도움
	2. 구강청결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1) 면도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갈아입기도움	1) 옷갈아입기
	6. 신체청결도움	1) 몸씻기 도움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도움	1) 일반식사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8.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도움	1) 변기사용 2) 침상배변・배뇨 3) 기저귀 교환 4)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10. 이동도움	1) 침상내이동 2) 휠체어 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기능 유지증진	1) 관절구축(오그라듦)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도움 4) 경구약물 복약도움

	12. 산책(외출)동행	1) 산책(외출)동행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1. 인지관리지원	1. 인지관리지원
	2. 의사소통 도움	2. 의사소통 도움

기능회복훈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기본 동작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5. 물리치료	1) 온냉열치료 2) 전기치료 3) 운동치료
	6. 작업치료	1) 언어치료 2) 작업치료

1. 관찰 및 측정	1) 건강상태 확인	(1) 활력징후 측정 (2) 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3) 혈당 측정
2. 건강 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경구 투약 (4) 비위관・위관 투약 (5)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6) 인슐린 주사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소독관리 (4)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관절오그라듦 예방	(1)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2)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5) 치매돌봄 정보제공	(1) 치매약물 관리
	6) 인지훈련	(1) 인지기능 평가 (2)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7) 의료기관 의뢰 등	(1) 촉탁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3. 간호관리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확인 (2) 위루관(PEG-tube) 관리 (3)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관장 (4) 장루관리 (5) 회음부 간호
	4) 통증관리	(1) 통증사정 (2) 온・냉요법 (3) 이완요법 (4) 약물요법
	5) 호흡기 간호	(1) 가습기 (2) 산소요법 (3) 흡인간호 (4) 기관절개관 관리
	6) 구강간호	(1) 구강간호
	7) 당뇨발 관리	(1) 당뇨발 관리 (2) 상처관리
	8) 투석관리	(1) 복막투석 관리 (2) 혈액투석 관리
4. 응급 서비스	1) 응급간호	(1) 질식시 응급대처 (2) 경련시 응급대처 (3) 화상시 응급대처 (4) 낙상시 응급대처

		(5)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6)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 일일 생활시간표

시간	내용
8:00~09:30	아침송영
09:30~10:20	바이탈 체크, 간식 제공
10:20~10:50	힘뇌체조 및 신체활동운동
10:50~11:50	인지지원 프로그램 진행
11:50~12:20	점심식사 및 개인 위생관리
12:20~13:00	개인활동, 휴식 말벗지원
13:00~14:20	공기압 마사지
14:20~15:00	오후간식 및 개인 취미 활동
15:00 ~16:00	인지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16:00~16:30	저녁식사 및 개인위생관리
16:30~18:00	저녁 송영

○ 프로그램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신체활동	특화프로그램	야외활동	신체활동	신체활동	신체활동
인지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인지활동
여가활동	노래방	여가활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 격월 가족지지 (생신잔치) 진행 ▶ 어버이날 행사 및 크리미스, 송년행사 진행					

● (2025년 06월01일 현재기준 공동가정생활 시설현황)

○ 종사자 근무체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1	1	1	3	1

○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수가(급여한도)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1,600	1,177,000	657,400

○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40)	감경 9%, 6%

○ 계약의사

초진	재진
3,520원	2,510원

○ 배상책임보험

상품명	책임보험 내용	계약기간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	전문직업인배상책임 (대인/대물)	2021-12-17~2031-12-17

○ 화재보험

상품명	책임보험 내용	계약기간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 (대인/대물)	2021-12-17~2031-12-17

● 후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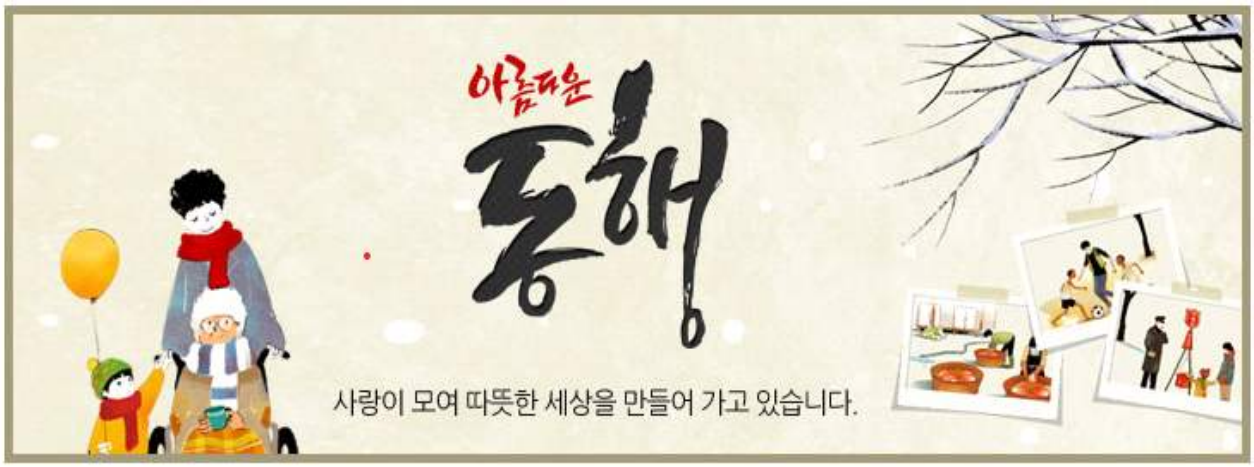

후원의 종류

지정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
직접 내방,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정기 후원 하실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직접 내방,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비지정,일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어르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물품은 어르신을 위해 사용됩니다.

▶계좌안내 : 신한은행 140-012-500672 천사의집 주간보호센터

○ 자원봉사 안내 (신청은 기관전화 : 032-467-6933)

봉사분야	봉사내용
정서지원	말벗, 산책, 프로그램 진행
의료봉사	한방진료, 수지침
이미용봉사	목욕, 마사지, 머리커트, 손발톱 정리
프로그램	행사지원, 노래, 레크레이션

● 노인학대예방 정보.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 ·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코로나 대응 현황

구분 / 단계		억제단계	지역유행	권역유행	대유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 황		인구10만명당 1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	인구10만명당 1명이상 모임 인원제한	인구10만명당 2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인구10만명당 4명 이상 외출금지
생활시설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			면회 금지
이용자·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이용시설운영	운영	정상 운영			운영 중단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시행
	주의사항	1)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